

의안번호	제 124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규완 의원 외 8인
발의연월일	2007년 6월 28일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규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
----------	-----

발의연월일 : 2007. 6. 28.

발 의 자 : 이규완 · 권광택 · 이대원
이영복 · 민경환 · 박종갑
박영웅 · 심홍섭 · 이언구
(9인)

1. 제안이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입법취지가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 등 규정(안 제1조)
- 위해로부터 보호, 거래의 자유 등 소비자 권리 규정(안 제3조)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소비자의 권리향상과 교육 등 소비자 능력향상 규정(안 제7조)
- 소비자가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대책 강구 규정(안 제8조)
-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안 제9조)
-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10조)
-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11조)
-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록기준, 활동지원 보완(안 제16~19조)

-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규정
(안 제20조)
-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안 제22조)
-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붙임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충청북도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도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도의 책무) 도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2장 소비자 권익 증진

제5조 (위해의 방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1. 물품 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도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도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방법
3.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②도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도는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도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소비자 시책의 추진 체계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충청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되,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충청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소비자정책시행계획수립
2. 소비자시책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설치

제11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행정·피해구제의 상담·처리를 위하여 상담창구인력 1인 이상을 지정배치 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 도에 설치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피해구제의 신청)소비자는 센터에 방문, 서신,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구제의 처리) 도지사는 센터에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

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해사례의 공표)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거나 도보, 인터넷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 지원

제16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도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제1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도에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 및 사무실을 갖추 것
4.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인 이상을 갖추 것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제18조 (소비자의 조직 활동 지원) 도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홍보·공동구매·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제19조 (보조금의 지급) 도지사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소비자 안전

제20조 (취약계층의 보호) ①도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1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필요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단체는 2008. 3. 27일까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시책”을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으로, 제2조제6호를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을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등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제3조제3항 중 “소비자보호”를 “소비자 권익 증진”으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소비자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